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962 발의연월일 : 2009.12.8. 발 의 자 : 김 용 재 의원

(찬성자 7인)

□ 제안이유

가.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· 개선하고,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보호·육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 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함.(안 제18조제3항)
- 나.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.(안 제18조제4항)
- 다.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.(안 제18조제5항)
- 라.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.(안 제40조)

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(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)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8조(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 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.
<신설>	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<u><신설></u>	(5)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· 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 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
<신설>	제40조(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)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	□ 문화예술진흥법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-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
관계법령	 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- 제3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 -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- 제13조(미술장식의 설치 절차・방법) - 제14조(미술장식심의위원회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문화예술진흥법]

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·조각·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】

- 제3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) 법 제5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"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, 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 및 공조실(공조실)의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이 1만 제곱 미터(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) 이상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,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한다. <개정 2008.6.11>

- 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- 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·집회장 및 관람장
- 4. 판매시설
- 5.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- 6. 의료시설 중 병원
- 7. 업무시설
- 8. 숙박시설
- 9. 위락시설
- 10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-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"건축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.
-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건축 비용"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(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)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9>④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미술장식"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- 1. 회화·조각·공예·사진·서예 등 조형예술물
- 2. 벽화·분수대·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
-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
- 제13조(미술장식의 설치 절차·방법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·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에게,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·평가를 신청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14조(미술장식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미술장식의 가격
 - 2. 미술장식의 예술성
 - 3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 - 4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 - 5.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 - 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